

수원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9632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9632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9. 23 선고 2020가소1057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주상복합아파트 대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주규환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7. 6.

판결선고 2022. 8. 2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9. 23. 선고 2020가소1057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17,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1.부터 2022.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5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A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1.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20. 4.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기소되어 2021. 5.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본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피해자인 원고의 잡수입 관리 등 공금관리 계좌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예비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1. 2. 11.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잡수입, 광고수입 등 총 19,511,000원 중 7,611,000원을 피고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원고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관리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의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정356(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은 피고와 검사 모두가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21노3588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10, 11(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잡수입, 광고수입 등 원고의 공금을 피고 개인의 예금계좌로 관리하면서 총 19,53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돈을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계좌 및 장기수선충당금 계좌로 입금하고 운영비, 임직원 회식비, 명절비 등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재물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2. 11.부터 2015. 9. 21.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공금 7,611,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위 7,6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의 잡수입, 광고수입 등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관리하지 않았다.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당시 원고의 총무가 ‘원고의 잡수입은 피고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따로 장부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당시 원고의 감사도 ‘원고의 잡수입 부분에 대하여 회계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인계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유죄로 인정된 7,611,000원은 원고의

장기수선충당금 계좌로 입금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돈이다.

④ 피고가 원고의 업무나 이익을 위해 지출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을 제3 내지 7호증)은 대부분 피고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돈이 인출 또는 이체된 내역이거나 피고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그 내역만으로 그러한 돈의 지출이 원고의 업무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비 관리에 있어 장부 작성과 영수증 처리를 철저히 하였다는 취지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의 진술서(을 제8호증)는, 이를 뒷받침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당시 원고의 총무 및 감사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7,611,000원 및 피고가 원고의 공금을 임의로 인출 또는 사용한 마지막 날인 2015. 9. 2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9.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을 제12, 13호증을 제출하면서 원고에게 합계 6,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의 변제 명목으로 2022. 1. 13. 5,000,000원 및 2022. 1. 20. 1,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총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79조 제1항), 이 경우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고,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되며, 다만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 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참조), 피고가 변제한 위 6,000,000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 채무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은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총당의 순서를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총당의 순서와 달리 한다는 합의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6,000,000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 채무의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총당함이 타당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2022. 1. 13. 변제한 5,000,000원은 손해배상 원금 7,611,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9. 22.부터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2,402,156원[$= 7,611,000\text{원} \times \{(2015. 9. 22.\text{부터 } 2015. 12. 31.\text{까지 } 101\text{일} / 365\text{일} \times \text{연 } 5\%) + (2016\text{년부터 } 2021\text{년까지 } 6\text{년} \times \text{연 } 5\%) + (2022. 1. 1.\text{부터 } 2022. 1. 13.\text{까지 } 13\text{일} / 365\text{일} \times \text{연 } 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원금 2,597,844원($= 5,000,000\text{원} - 2,402,156\text{원}$)에, 2022. 1. 20. 변제한 1,000,000원은 남은 손해배상 원금 5,013,156원($= 7,611,100\text{원} - 2,597,844\text{원}$)에 대한 2022. 1. 14.부터 그 때까지 지연손해금 4,807원[$= 5,013,156\text{원} \times (2022. 1. 14.\text{부터 } 2022. 1. 20.\text{까지 } 7\text{일} / 365\text{일} \times \text{연 } 5\%)$] 및 원금 995,193원($= 1,000,000\text{원} - 4,807\text{원}$)에 각 차례로 총당되고, 마지막으로 변제한 위 2022. 1. 20. 기준으로 손해배상 원금 4,017,963원($= 5,013,156\text{원} - 995,193\text{원}$)이 남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4,017,96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변제총당일 다음날인 2022. 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김문성, 판사 정승화